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No. 2020-					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 정 상 조 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액(천원)	
○○○○○ 처 (○○○○○○○○부)	2020년	부서주의	-	-	-

【제 목】 국고보조금 반환관련 업무소홀

□ 업무내용

○ ○○○○○○ 경기행복주택 주택사업계획승인 “취소” 현황

- ○○○○○○ 경기행복주택(이하 “○○○○○”이라 한다) 사업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○○(○○○○○관리공사)와 2017년 ○○월 사업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, 착공예정 이였다
- 그러나 현장확인결과 “무단점유자의 대상필지 불법점유”로 불법건축물신고, 불법점유자 퇴거조치요청, 행정대집행 요청, 무단점유자 고발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무단점유자의 미퇴거로 착공이 ○년 이상 지연되었다.
-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“사업성이 악화”되어 2020.○○.○○. 사업취소(안)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, 금년 ○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, ○월 ○○도에 국고보조금 반납 협조 요청 및 ○○에 “사업취소관련 소(부당이득반환 청구, 채무부존재 확인, 손해배상 청구 소송)를 제기” 하였다.

○ ○○○○○○ 경기행복주택 주택사업계획변경(축소)승인(○○○호 → ○○호) 현황

- 도유지를 활용하여 ○○○○○에 행복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○○○○○ 경기행복주택(이하 “○○○○○” 이라한다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, 2018년 ○○월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, 2018년 ○월부터 “건축취소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인근 서면동의 민원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급기야 “2019년 ○월 공사를 중지” 하게 되었다.
- 이에 공사재개를 위하여 비대위간담회(○차), 국회의원(○○○) 및 도의원(○○○) 면담, ○○시장 민원인(비대위)면담,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, ○○시장 주재 대책회의, 도의회 의장보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“2019년 ○○월 ○○일 비대위와 사업규모를 축소(○○○호 → ○○호)하고, 단지 내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”하고, 공사를 재개하였으며, 公社 내 경영회의(2019.○○)를

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“2020년 ○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(축소)을 승인” 하였다.

○ 국고보조금 반납관련 진행현황

- ○○○○ ○○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2016년, 2017년 2회차에 걸쳐 ○○○백만원, ○○○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고, ○○○○은 2017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○○○백만원을 수령하였다.
- ○○○○○○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(2020.○○.○○)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○○도 ○○주택과와 유선 및 e-mail로 사전협의(○월)를 거쳐 2020.○○.○○. ○○○○○○의 국고보조금(총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원)을 반납요청 하였으며, ○○도에서는 ○월 ○일 “추가경정 예산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납일정을 추후 통지예정”임을 알렸다.
- 이후 ○○○○ 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(2020.○○.○○)되어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○○도 ○○주택과와 ○월○○일부터 ○○월 ○○일까지 e-mail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○○○○○○과 ○○○○○○의 반납예정금액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였고, 이에 맞추어 ○○도에서는 ○○월 ○○일 국토부에 “국고보조금 및 이자액 반납고지서 발급요청” 하였다.

□ 감사결과

○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공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소홀

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조례에는 “보조금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확정”해야 하므로 ○○○○○○1부에서는 ○○도로부터 ○월○일 “국고보조금 반납일정에 대하여 추후 통지예정”임을 안내받았고, 유선 및 e-mail로 사전협의(○~○월) 내용에 비추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이사회를 통한 예산이용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었다.

○ 국고보조금 반환 추진일정 관리소홀

-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취소 및 축소 승인 통보 후 보조금반환과 관련하여 몇 차례 사전협의를 있었으나, 그 이후 ○○도 및 지출부서와 세부적인 반환절차나 일정 등을 확인하지 않아 납기일정에 촉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○ 국고보조금 이자비용 산정비용 ⇨ 적정

- 국고보조금 반납비용 중 이자비용 산정기준은 “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”하게 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公社에서 거래중인 농협의 해당연도별 수령한 금액에 입출금식예금금리를 적용(0.1%~0.15%)하여 산정된 “이자수입에 법인세, 지방소득세를 제외하여 비용을 산정”한 것으로 公社에 별도의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○○부에 “부서주의” 조치

- 국고보조금 반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,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일정관리를 촉박하게 관리한 ○○○○○○○부에 대해 “부서주의” 통보